



(2쪽)

가산세 산출근거

이 납부고지서는 ()에 귀속되는 ()로서 ()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 성립연도는 ()년입니다.

구 분	()세	()세	
①			
②			
③			
④여기에 가산세			원을 더하고
⑤각종 공제세액			원을 빼면
(법정공제, 가납부세액)			
⑥ 고지세액은			원 입니다.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이 납부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납부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①~⑫)			

(3쪽)

납부서 (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 (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주소(사업장)	과세기간				조세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계			
납기경과 . . .	계		
납기 후 납부시 우측<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납기경과 . . .	납부할 금액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드림

수납인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기회계	기회재정부 소관	조세	
	과세기간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기결과	
납기 후 납부시 아래<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납기결과	

[illegible]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우체국 행은 (수납인)

안 내 말 씀

-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자납부 이용방법' 참조).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고지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서 휴대폰문자·이메일로 안내해드리며, 우편송달은 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금액 5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납세자권익24 > 납세자권익보호 소개 >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 불복]를 참고하거나,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100만원) 이상: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시어 납부할 금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100만원) 미만: 송달받은 당초 납부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할 금액(예시)]

- ◎ 세목별 고지세액 150만원(가산세 20만원 포함)을 납부기한 후에 납부하는 경우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세 대상금액 130만원)

1일후	1,539,280	11일후	1,542,080	21일후	1,544,880
2일후	1,539,560	12일후	1,542,360	22일후	1,545,160
3일후	1,539,840	13일후	1,542,640	23일후	1,545,440
4일후	1,540,120	14일후	1,542,920	24일후	1,545,720
5일후	1,540,400	15일후	1,543,200	25일후	1,546,000
6일후	1,540,680	16일후	1,543,480	26일후	1,546,280
7일후	1,540,960	17일후	1,543,760	27일후	1,546,560
8일후	1,541,240	18일후	1,544,040	28일후	1,546,840
9일후	1,541,520	19일후	1,544,320	29일후	1,547,120
10일후	1,541,800	20일후	1,544,600	30일후	1,547,400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금 대상금액 100만원)

1일후~1개월까지	1,030,000	2개월후~3개월까지	1,045,000
1개월후~2개월까지	1,037,500	3개월후~4개월까지	1,052,500

-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고지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 이용방법

-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 가능 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 홈택스(홈택스 앱 포함)(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텍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